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I클래스 :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</p> <p>6.~9. 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I클래스 : <u>집합투자기구 및</u>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</p> <p>6.~9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